

## 질병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



- 대상  
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·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(보육시설, 유치원, 초등학교) 이용 아동
- 이용단가  
시간당 **9,360원**(부모부담 4,680원)
- 제공되는 서비스  
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
- 제출 서류  
진단서(소견서) 또는 처방전 중 1부, 시설 미이용 확인서(결석확인서 등)

## 종합형(가사추가형) 돌봄 서비스



- 이용단가  
**10,140원** / 1시간  
\*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, 야간·휴일은 할증
- 서비스 내용  
시간제 돌봄서비스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

## 서비스 신청방법·절차



- 국민행복카드 신청  
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(삼성카드, 롯데카드, BC카드)
- 정부지원 신청



- 정부미지원 가정(본인부담)  
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



<http://idolbom.go.kr>  
1577-2514(평일 9시~18시)

# 아이돌봄 지원사업



##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



### ○ 아이돌봄서비스란?

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**찾아가는 돌봄 서비스**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.



### ○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

1. 취업 한부모, 맞벌이 가정
2. 장애부모 가정
3. 다자녀 가정
  -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
  -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
4. 기타 양육부담 가정
  - 부 또는 모의 입중 가능한 장기 입원(1개월 이상)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
  -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
  - 모(母)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·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

\* 단,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

## 시간제 돌봄 서비스



### ○ 대상

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

### ○ 정부지원 시간

연 600시간 이하

-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

### ○ 서비스 내용

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급·간식서비스 등(단, 가사활동은 제외됨)

### ○ 이용요금

유형	소득 기준 (4인가족 기준중위소득)	시간제(7800원 /1시간)			
		A형		B형	
		정부 지원	본인 부담	정부 지원	본인 부담
가형	60% 이하 (2,712천원)	6,240원	1,560원	5,460원	2,340원
나형	85% 이하 (3,841천원)	3,900원	3,900원	-	7,800원
다형	120% 이하 (5,423천원)	2,340원	5,460원	-	7,800원
라형	120% 초과	-	7,800원	-	7,800원

\* (A형) '11. 1.1. 이후 출생 아동, (B형) '10. 12.31. 이전 출생 아동  
\* 야간·휴일 할증요금 부과  
\* 돌봄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%, 3명 시 총금액의 33.3%할인

##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



### ○ 대상

만3개월 이상 ~ 만36개월 이하 영아

### ○ 정부지원 시간

월 120~200시간 이하

- 1일 1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

### ○ 서비스 내용

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

### ○ 이용요금

유형	소득 기준 (4인가족 기준중위소득)	영아종일제 (월 156만원, 200시간)	
		정부지원	본인부담
가형	60% 이하 (2,712천원)	117만원	39만원
나형	85% 이하 (3,841천원)	85.8만원	70.2만원
다형	120% 이하 (5,423천원)	54.6만원	101.4만원
라형	120% 초과	-	156만원

\* 야간·휴일 할증요금 부과

